

# 보도자료



보도일시	<b>2014. 8. 27(수) 09:00</b>		
배포일시	2014. 8. 27(수) 09:00	담당부서	세제실 관세제도과
담당과장	이상길 (044-215-4410)	담당자	주성렬 사무관 (044-215-4412)

## 제목: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조정 2014.9.5. 시행

- 기획재정부는 '14.8.6.(수) 세제개편안 발표시 다음과 같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음
  - ①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
  - ②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% 경감(15만원 한도),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인상(30%→40%) 등
- 이에, 기획재정부는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(상기 ①)에 대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'14.8.27.(수) 입법예고하였으며,
  -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
  - '14.9.5.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(600달러)를 적용할 예정임
- 참고로,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(상기 ②)는
  - 관세법 개정사항으로 정기국회에 개정안(정부안)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임